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도모하고
- 나. 현재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제한을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으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종별 규모가 1종부터 3종까지인 사업자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지원확대 도모 및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0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법 제6조의 규정</u>에 의하여 지정된 <u>악취관리지역 안</u>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가 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 종별 규모가 1종부터 3종 까지인 사업자	제3조 (지원대상) ①----- ----- <u>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u> ----- ----- ----- ----- ----- ----- ----- ----- ----- 다만, <u>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u>에 -----. 1. (삭제) 2. (삭제)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제7조(배출허용기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제8조(배출허용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2.4]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2.4]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2.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